

회의록

일시	'26.4.10.(금), 10:30~11:30	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5층 E-Room(이룸)
안건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일반형) 지원대상자 선정		
의결주문	다음과 같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일반형)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호)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공단 규칙 제852호)에 의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일반형)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의결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일반형) 지원대상자를 [첨부]와 같이 의결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인)		
위원	위원 (인)		
	간사 (인)		

- 첨부 1.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의결사항 1부.
2.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결정 현황 1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의결사항

1. 평가방법은 외부 전문평가기관인 _____의 평가 결과에 따르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확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총점 1,050점의 100분의 60인 630점 미만인 사업체 및 신용등급이 C, D인 사업체, 최근 2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 현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있는 경우 또는 2년 이내 임금체불의 사유로 무상지원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일반형)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부터 '_____' 등 선정대상 사업체 120개소에 대하여 기준액*의 100%까지 지급하여(다만, 신청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체 중 3개소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 22백만원을 감액한다.) 총 422.6억원을 결정한다. 후순위는 121순위부터 133순위까지 13개소를 두며, 후순위를 포함한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심사 집계표와 같다.

* 기준액: 공단 산정금액의 75%와 신청금액 중 낮은 금액, 만약 총 투자액이 공단 산정금액보다 작은 경우 총 투자액의 75%와 신청금액 중 낮은 금액
3. 지원대상자 선정 후 외부경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 등에서 수치 오류 등으로 인한 추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대상자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 재확인 서명 이후 추가 발표 및 지원한다.